

건축사협회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율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or Institutes such as KIRA

박시준 | 정부법무공단 /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로 건축사회 등에 적용되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지부로서 해당지역의 건축사들로 구성된 각 지방건축사회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도 모두 사업자단체다. ‘형태 여하를 불문’하기 때문에 조직형태는 법인이든 조합이든 상관없으며, 지부나 분회 등 하부기관도 상위 사업자단체와 별개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별개의 사업자단체가 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된다. 그러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데, 사업자단체는 과당경쟁의 방지라는 명목 하에 가격담합이나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의 원천이 될 여지가 있으며, 감독관청 등과의 조율을 통하여 시장의 기존질서를 유지하고 신규진입을 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집행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서는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위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사회의 활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협회 또는 건축사회 관계자는 주목하여 개별 건축사가 낸 소중한 회비가 과징금 등으로 징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 1 : 13개 지방건축사회가 설계업무와 감리업무를 분리 시행하도록 하면서 공동감리사무소나 감리회사 등을 설립한 행위는 각 해당지역 감리용역 거래분야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가 감리보수기준 및 운용방법을 결정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사례 2 : 지방건축사회가 「복지 및 상조후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설계 및 감리 대가 일부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분기별로 공동분배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하다(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의 의견 제2008-024호 등). ■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07~2008년 정부법무공단 설립준비단, 2010년 법무부 국가승무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기술 평가위원,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및 기획홍보팀장이다.